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4. 10. 16 선고 2024가단2367 판결 [건물명도 등 청구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 2024. 9. 11.

판결 선고 2024. 10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가"부분 40㎡를 인도하고,
나. 2,200,000원 및 2024. 4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선내 "가"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창형

별지